

의안번호	제2971호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5. 7. 4.

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제297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7. 4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사유

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(심사의결)하고자 합니다.

2. 재산현황 총괄

구분		수량	면적(m ²)	기준가격(천원)	비고
취득	건물	1	2,968.78	5,000,000	*추정공사비

3. 사업별 재산내역

사업명	재산구분	재산유형	재산의 표시			담당부서
			수량	면적(m ²)	기준가격(천원)	
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	취득	건물	1	2,968.78	5,000,000	문화예술과

4. 사업별 개요

①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

가. 사업목적 및 용도

○ (목적)

- 지역 내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여,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
-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공간 제공 및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역할 수행

○ (용도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), 근린생활시설

나. 취득 개요

- (내용) 고성군-(주)무학 전시관 건립 협약체결로 건축물 건립과 동시에 시행자인 (주)무학이 고성군에 기부채납
- (근거) 「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 상호협력협약서」(2024.1.12.)
- (사업기간) 2024. ~ 2026.
- (총사업비) 5,000백만 원
- (재원조달) 민간자본
- (대상 재산현황) (행정재산, 재산관리관: 문화예술과장)

구분	소재지	지목/구조	연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비고
건물	기월리 147-1 기월리 147-5	철근 콘크리트	2,968.78	5,000,000	*추정공사비

- 건물 세부시설 및 면적

구분	연면적(㎡)	내용
지상1층	1,250.8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전시실 194.04㎡ / 사무실, 강의실 60.96㎡ ▸ (공용) 전기실 37.8㎡ / 홀, 복도, 화장실, 계단 등 287.27㎡ ▸ (공용) 야외데크 하부 670.77㎡
지상2층	1,247.9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전시장 253.98㎡ / 근린생활시설(카페) 28.62㎡ ▸ (공용) 홀, 복도, 화장실, 계단, 수유실 등 375.41㎡ ▸ (공용) 야외데크 등 585.95㎡
지상3층	469.9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회의실, 관리실 75㎡ ▸ (공용) 홀, 복도, 화장실, 계단 등 67.86㎡ ▸ (공용) 옥상마당 등 327.11㎡
합계	2,968.78	

- 전시관 건립부지 현황

소재지	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계		2필지		17,250	4,934		
고성	기월	147-1	대	10,036	668	고성군	
고성	기월	147-5	대	7,214	4,266	고성군	

다. 추진경위

- 2024. 1. 12.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 업무협약(고성군-무학)
- 2024. 7. 17.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계획 수립(기본계획)
- 2024. 9. 30.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 개최(중간보고)
- 2025. 1. 17. 국가유산청 사전협의(매장문화유산 검토)
- 2025. 3. 10. 전시관 건립관련 인허가TF팀 협력회의 개최
- 2025. 4. 17. 군의회 의견청취(일부 변경의견)
- 2025. 5. 27.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공공청사→문화시설)
- 2025. 6. 4. 고성문화예술 전시관 부지 문화유산 시굴조사 용역
- 2025. 6.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·심의

라. 향후계획

- 2025. 7.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(재산취득)
- 2025. 8.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대부사용료 감면)
- 2025. 8. 정밀발굴조사 용역 실시
- 2025. 11. 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
(세부 이행협약 및 기부채납 협약)
- 2026. 2. 군관리계획 실시인가 및 전시관 건축 착공
- 2026.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건축 준공

마. 기대효과

- 세계유산과 연계한 문화예술인의 염원을 담은 랜드마크 건물 건립
-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

■ 추진부서: 문화예술과장 최다원 문화예술담당 윤정희 담당자 김민정 (☎2203)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



5. 재산구분별 취득목록

□ 건물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기준가격 (천원)	취득 시기	취득(매입)사유	비고
	구조	소 재 지	면적(㎡)				
합 계	1동			2,968.78	5,000,000		
1	철근 콘크리트	고성읍 기월리 147-1 고성읍 기월리 147-5	2,968.78	5,000,000	2026	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부채납	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**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**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□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 재산의 취득·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